건설업법중 개정법률안

국회는 지난 12월19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업법 개정안」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지에서는 이날 통과, 최종 확정된 건설관련법률 개정·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제6조] 건설업 면허발급 및 면허갱신주기 조정

지금까지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씩 내줬으나 앞으로는 매년 신규처분하되 건설업면허의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건설업의 면허 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면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⑥(생 략)	제6조(건설업의 면허 등) ① ……………… …………………………………………… …… 업종별 ………………………………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의 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④ ……………………… 5년 ……………… …………………………………………… …………………………………………… ⑤~⑥(현행과 같음)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제8조] 건설업의 겸업제한

기존면허 취득자로서 겸업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자는 95년 6월30일까지 법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第8조(건설업면허의 제한) ① 일반 건설업면허(이하 "일반면허"라 한다)또는 특수건설업면허(이하 "특수면허"라 한다)와 전문건설업면허(이하 "전문면허"라 한다)는 한 사람이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전문면허는 대통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한 사람이 2개 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신 설〉	第8조(건설업의 겸업제한) ① 일반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 건설업자"라 한다)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건설업의 면허를 여러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개인명의로 다른 면허(전문면허 포함)의 중복보유를 금지.

[제1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조정

일선 발주관서가 10여년 이상 익숙해져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2개 이상 전문면허 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복합공사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립된 항을 신설

현 행	개 정	비 고
제12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2조(건설업자 영업범위)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 … ……………………………………………… ……………………………………… 시 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2개 업종 이상의 전문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그동안 전문공사라도 복합공사는 시공할 수 없던 폐단이 없어지지게 되고, 전문건설업자가 수주·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상당히 넓어짐.

[제2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건설업체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한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범위내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하고 하수급인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신설〉	제21조의 2(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 쌓기식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耐用기간 또는 설계산의 구조능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 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부대입찰 조건변경 금지규정 신설

건설업체가 부대입찰에 의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견적을 받은 내용대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이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 …………………………………………………………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 …………………………………………………………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 ………………………………………………………… ………………………………………………………… ……
제22조의 2(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① (생 략)	제22조의 2(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있다. (후반 신설)	② ··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법적근거 격상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직불사유를 법으로 격상, 이 규정은 정부공사에 대하여는 93년 5월2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현 행	개 정	비 고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신 설〉 〈신 설〉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불사유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이 예가의 85%미만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직불중지요청이 가능하다.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현 행	개 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갈음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6조] 건설공사표식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건설공사 완공시당해 공사에 참여한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식판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표식판의 설치 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제36조(건설공사품질시험) ① 건설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건설공사표식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내걸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식판을 건설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설업체 경영지도

건설부 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연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신설했다. 또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 행	개 정
제39조(경영지도)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경영의 개선 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의 경영에 관하여 건설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제39조(경영지도) ①……
〈신 설〉	②건설부 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연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건설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련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제41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생 략	제41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현행과 같음)
〈신 설〉	②건설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②(생 략)	③(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건설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련 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 시정명령 해당사항

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때와 부대입찰에 의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 체결을

거부한 경우와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판을 설치하지 않은 때에 건설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현행	개정
第49조(시정명령 등)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49조(시정명령 등)………………………………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의3. 제22조의 2 제2항 후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
3·4(생 략)	3·4(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 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부정수표 단속법중 개정법률

※ 금융기관의 고발업무기간을 현행 48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부도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지난 12월10일 개정 공포된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본래의 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도를 수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도를 낸 기업인의 기업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에 제4항을 신설

①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는 48시간 이내에,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